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내>

최근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바, 외국인근로자의 양호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부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업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패널, 컨테이너 등) 고용허가 불허

-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
 - * 시행시기: '21.1월 농축산·어업 고용허가 시부터, '21.7월 전 업종(제조업 등) 확대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허용
 - * '21.2월 고시개정 예정

○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의무화

-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 시행시기: '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7월 전 업종(제조업 등) 확대

○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을 2.5점→5점으로 상향
 - * 시행시기: '21.2월 신규 접수 시부터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외국인력팀(화성)